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665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보험료 부과 개시 및 종료 시점 변경	2

I. 개요

1.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66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진욱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9. 3.
- (3) 회 부 일 : 2025. 9.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료를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매월 2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거의 한 달치에 가까운 보험료가 면제되고, 가입자가 월초에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이 그 달 전체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실제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되, 앞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을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보험료 부과 개시 및 종료 시점 변경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험료 부과 개시 시점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 종료 시점을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서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9조(보험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 ⑥ (생략)	제69조(보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징수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6.1.1.

나. 검토의견

- 현행법¹⁾은 자격 취득시점을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로

하되,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²⁾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날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며,

자격 상실시점을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가 된 날 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로 하고 있음.

1)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 현행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 개시 및 종료 시점을 살펴보면, 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하되, 자격 취득일이 매월 1일이거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은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함³⁾.

- 즉,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외에 일반적인 경우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하면 그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나, 매월 2일부터 말일까지 중에 자격을 취득하면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됨. 한편, 매월 1일 자격을 상실하면 그 직전 달까지 보험료가 부과되나, 매월 2일부터 말일까지 중에 자격을 상실하면 그 달까지 보험료가 부과됨.

□ 이에 따라 가입자가 매월 2일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거의 한 달 치에 가까운 보험료가 면제되고, 가입자가 매월 1일에 사망하는 경우 2일(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이 상실되므로 유가족이 그 달 전체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실제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92113호, 김상희의원 대표발의)은 다음과 같이 제안이유를 제시함.

“일부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의 경우 보험급여가 유리한 건강보험을 이용하면서 최소 2일에 자격을 취득하여 다음 달 1일이 되기 전에 건강보험을 탈퇴하는 등 건강보험 자격 취득과 상실을 반복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제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해당 개정안은 2019년 7월 17일 대안반영폐기되었고, 이를 반영한 대안은 2019년 10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됨.

□ 이에 개정안은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자격 상실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의 일치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 이에 따르면 자격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없이 자격을 취득하는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고, 매월 1일에 자격이 상실되면 그 전 달까지, 매월 2일부터 말일 중에 자격이 상실되면 그 직전 달까지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하게 됨.

□ 다만,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간 불일치 문제는 월 단위 부과 방식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더라도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보험료 부과 개시 시점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르면 매월 2일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거의 한 달 치에 가까운 보험료가 면제되는 문제가 있고, 개정안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매월 말일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한 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보험급여는 받지 못하고 보험료만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관련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월 중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군 제대 등으로 자격정지가 해제되는 경우에 자격을 취득·유지한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월 보험료 전부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지적⁴⁾을 고려하여 2006년 10월 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개정 >

2006. 11. 1. 이전	2006. 11. 1. 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2조(보험료)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③ ~ ⑤ (생 략)	제62조(보험료) ① (생 략) ②-----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일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 ③ ~ ⑤ (생 략)

□ 아울러, 보험료 부과 종료 시점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르면 매월 2일부터 말일 중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자격 상실 이후 해당 달에는 보험급여는 받지 못하고 보험료만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1일 자격 상실 시 그 직전 달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급여만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월 단위 보험료 부과 방식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 단위 보험료 부과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월 중 자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부담의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508호, 정부 제출) 주요내용 중

“ 나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면제대상 월의 산정(안 제62조제2항)

(1) 현행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기간은 월 단위로 부과되며 월 중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군 제대 등으로 자격정지가 해제되는 경우에 자격을 취득·유지한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월 보험료 전부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체에 대한 논란과 가입자별 상이한 부과방식에 따라 보험료 계산이 복잡해지는 등 문제⁵⁾를 방지하고 부과 제도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월 단위 보험료 부과방식이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으로, 일 단위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일할계산 시 행정비용의 증가와 가입자별 유·불리에 따른 국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참고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월별계산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료 산정기간 중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 일할계산을 통해 이를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2011아112)은 일할계산을 하기 위한 행정비용의 증대 및 보험료 산정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을 고려하는 한편, 재산상태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간을 1개월의 범위로 한정된 점, 보험가입자가 차량의 처분 등 재산상태의 변동시점을 월말로 선택할 경우 그로 인한 보험료 산정상의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입법자의 선택이 자의적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⁶⁾.

5)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단위로 산정(현행법 제69조제5항)하고, 해당 세대 구성원들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현행법 제76조제3항, 제77조제2항) 소득 외에도 재산을 부과요소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입일수에 따라 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 세대 구성원이 변경될 때마다 해당 세대의 전체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고지서를 재발송해야 하는 등 행정비용의 과도한 추가 발생 및 가입자 혼란이 우려되고, 보험료가 매월 변동할 경우 가입자들은 보험료 예측이 어려워 납부 편의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음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6) 헌법재판소 결정례, 2011헌바92, 2012.4.24.

-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역 간 자격변동은 연간 약 6,600만 건 발생함.

<2020년 ~ 2025년 자격 변동 현황>

(단위: 천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자격 변동 건	65,648	68,079	69,256	67,063	66,282	43,308

주1) 공단 부과통계(DW) 기준

주2) 단위 미만의 수는 반올림되어 있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보건복지부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자격상실월의 보험료 면제’를 통해 사망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나, 가입자의 자격 상실은 사망 외에도 사유와 시점이 월마다 불규칙하고 수시·대량으로 발생하므로 기 부과된 보험료에 대한 재산정·고지, 환급 업무 등 과도한 행정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임. 또한, 매월 1일 자격을 상실할 경우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은 월 말까지 보험급여를 이용 후 보험료를 면제받게 되므로 가입자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고, 월 말에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 월의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등 현행 월 단위 부과방식이 유지되는 한 보험급여 기간과 보험료 납부 기간의 불일치 문제는 여전

히 동일한 것에 반해,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정안과 같이 보험료 부과 기준을 변경하더라도, 현재의 월 단위 부과방식이 유지되는 한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의 불일치는 계속하여 발생하게 되므로, 개정안이 목표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건강보험 자격·부과 기준 변경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및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3